

제 2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본회의 2013.6.24(월) 10:00

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안」 검토보고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## 2. 제안이유

-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
- 전수교육관의 소재지와 기능(안 제3조, 제4조)
- 전수교육관의 관리·운영, 위탁기간,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전수교육관 수탁자의 의무사항,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전수교육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, 위탁에 따른 취소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)

## 4. 관계법령

- 문화재보호법 제41조,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

## 5. 검토의견

○ 허임량 전문위원입니다.

○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

○ 본 조례안은

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

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전수교육관의 소재지와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
- 안 제5조에서는 전수교육관의 관리·운영, 위탁 기간과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

전수교육관 수탁자의 의무사항,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과 시설 또는 설비의 위탁에 대한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취소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본 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위탁 관리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전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
-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

「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